

## 이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은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과도한 지원은 적정화하려는 것으로, 업종 전환 등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### < 보도 내용 >

- 2026.8.25. 중앙일보는 「“사업 확장했더니 상속세 100억” 85세 기업인 절규」 기사에서,
  - “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 문턱을 높이면서 사각지대도 생겨나고 있다.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기업 입장에선 하나의 주업종으로만 30년을 채워야 해 부담이 커진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 재정경제부 입장 >

- 이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은 전문 기술,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, 제도를 악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을 적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  - (정의 신설) 기업의 정의를 ‘전문 기술,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’으로 법률에 명확히 신설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제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  - (대상업종 조정)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 기술,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종을 조정하였습니다.
    - 또한,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대상업종을 원칙적으로 법률로 상향하되, 경제·사회 변화에 신속·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후 필요시 대통령령에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.
    - 이러한 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, 주차장업, 창고업, 도소매업, 병원 등을 대상업종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- (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) 전문 기술, 노하우의 승계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(10 → 30년) 및 상속인의 사후관리 요건(5 → 10년)을 상향하였습니다.
- 경영기간은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도 부족기간(30년 - 피상속인 경영기간)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연장을 전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(기업의 연속성 지원)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제한을 두지 않고\* 공제 수준도 최대 600억원에서 1,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합니다.
- \* 백년소상공인,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(중기부)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- (업종 전환) 기업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되, 무분별한 변경은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업종 전환을 제한하되, 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\*에 한해 허용하였습니다.
- \* 경제환경,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,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
-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공제대상업종간 별도 심사 없이 업종 변경이 가능하나, 개정 후에는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대분류 내 뿐 아니라 대분류 외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세제실<br>재산세제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만수 (044-215-4310) 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만기 (kmkey8431@korea.kr) |